

협력업체 모집 관련 문의 및 답변서

인력보유상태 평가기준

□ 인력보유상태 평가 기본원칙

① 해당분야 기술자/기능사(숙련기술자) 각각 분리 평가

- 기술자/기능사(숙련기술자) 간 인력 상호 보완/대체 불가능, 다만 각각 기술자/기능사(숙련기술자) 내에서는 인력 상위 등급일 경우 하위 등급 보완 가능

② 인력보유 인정기준

- 기본적으로 등급별 표준인력구성을 만족해야함
- .기술자/기능사(숙련기술자)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인원을 모두 만족시에만 초과 인력의 점수 인정
- 해당 분야의 표준인력이 기술자와 기능사를 모두 요구하나 신청업체의 제출인력 구성이 모두 기술자 이거나, 기능사를 일부 미충족하는 경우 기술자 초과 인력의 점수 미인정

③ 인력보유 점수 산정 방법

- 평가후 표준인력(붙임1의 8페이지) 대비 보유인력평가점수가 최종 평가점수임
- 단, 기능사(숙련기술자)가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기술자와 기능사 표준점수의 합계에서 각각의 표준점수가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술자와 기능사의 평점을 계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최종 평가점수임(표준인력산식 참조)

표준인력산식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표준점수	고급연기술자	중급연기술자	초급연기술자	표준점수	표준점수합계	최종평가점수 (모집공고 8페이지 참조)
계수	4	3	2	1.5	1		1.5	1	0.5			
표준인력	0	1	1	2	2	10	0	1	0	1	11	
예시1	1	1	2	2	2	16	1	1	2	3.5	19.5	$(16/11)+(3.5/11)=177\%$ (35점)
예시2	0	3	0	2	2	13	0	1	0	1	14	$(13/11)+(1/11)=127\%$ (32점)
예시3	0	0	0	20	0	5	0	3	0	3	8	$(5/11)+(3/11)=73\%$ (26점)
예시3-1	0	0	0	0	20	2	0	0	4	0	2	$(2/11)+(0/11)=18\%$ (0점)
예시4	0	6	0	0	0	10	2	0	0	2.5	12.5	$(10/11)+(2.5/11)=114\%$ (29점)

(예시1) 표준인력 대비 각 등급별 보유인력 수가 초과할 경우 초과 점수 부여

(예시2) 표준인력 요구 각 등급별 보유인력은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표준요구 인력 상위등급 인력이 많은 경우
 → 점수산정 : 표준인력으로 산정(즉 고급기술자 1명이 요구되나 특급이 3명인 경우 특급인원 2명은 특급으로 평가하고 남는 1명은 고급기술자등급으로 평가)

(예시3) 각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특정 등급의 인력만 보유한 경우
 → 점수산정 : 해당 등급요구인원과 하위등급 요구인원 해당 점수만 취득

(예시3-1) 각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최하위 특정 등급의 인력만 보유한 경우
 → 점수산정 : 해당 등급 요구인원 점수만 취득

(예시4) 각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특정 상위 등급의 인력만 보유한 경우
 → 점수산정 : 하위등급 요구인원 해당 점수만 취득